2018 장애인거주시설 자원개발 현황 및 욕구조사

2018. 12.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Korea Association of Welfare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목 차

Ⅰ. 조사필요성 1

Ⅱ. 문헌고찰 2

1. 사회복지조직의 자원개발 2

2. 장애인거주시설 재원과 자원개발 필요성 3

Ⅲ. 조사결과 4

1. 양적조사 4

1) 실시개요 4

2) 분석결과 5

2. 초점집단면접 29

1) 실시개요 29

2) 분석결과 29

Ⅳ. 결론 및 제언 35

1. 결과요약 35

2. 제언 38

참고문헌 41

부록 42

Ⅰ. 조사의 필요성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조직들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조직 간의 경쟁, 불충분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민간으로부터의 자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김영종, 2002). 사회복지조직의 자원은 조직의 생존유지와 성장, 그리고 목적달성에 필수적 요인이며, 사회복지자원의 유형은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자원은 크게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물적 자원은 정부보조금, 기업협찬금, 기부금, 서비스 이용료 등의 현금이나 현물을 말한다(양용희, 2001). 이러한 자원은 사회복지조직을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복지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본연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경환, 2015).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사회복지조직에서 조직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 정부 보조금 외의 대체 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안수만(2014)은 사회복지조직이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자율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강철희 등(2009)도 정부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조직의 생존을 위해 대체 자원개발이 요구되며, 김미숙 등(2002)은 복지욕구에 비해 정부의 보조금 상승률이 저조하므로 지역사회의 민간복지자원인 후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경환(2015)은 공공복지지출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국가의 경우 자발적 민간자원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원개발은 정부자원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조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조직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과업들이 경영과정이다(Venture for Fundrising, 2001), 특히 자원개발 중 모금활동은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부분과 경제적, 정신적 보상을 얻어냄으로써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정성훈, 2006).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복지조직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김연수·이광석, 2011). 허은정(2016)은 사회복지조직의 모금은 사회구성원들이 기부를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하였다. 즉, 사회복지조직의 자원개발은 조직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재원을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궁극적인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사회복지조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적절한 배분을 통해 선순환적인 사회구조를 창출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원개발의 중요성은 대규모화된 시설이 주를 이루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에는 다양한 재원이 사용되는데, 주로 정부자원인 보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나 부족한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익사업비(서비스 이용 등), 법인전입금, 후원금(개인 및 기업) 등의 수입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2015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관리운

영비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보조금 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30~40%이며, 정부보조금으로는 1분기 관리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5). 현실적으로 정부보조금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각 시설에서는 다양한 모금활동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보조금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거주인 및 시설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조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원개발 현황을 파악하여 현 수준을 점검하고, 자원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 중 현물 및 현금자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소재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원개발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였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전체적인 자원개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본 조사결과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원개발 현황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사회복지조직의 자원개발

사회복지조직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조직 간 경쟁 심화 및 불충분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민간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김영종, 2002). 복지 재정에는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자발적 민간자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자원은 필요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뿐 아니라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본연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경환 외, 2009).

자원은 속성에 따라서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으로 구분된다. 물적 자원이란 정부보조금, 기업협찬금, 시민기부금(현금, 부동산, 증권, 물품 등), 서비스 이용료(의료, 상담, 교육 등) 등의 현금이나 현물을 말하며, 인적자원은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 인력, 지역사회 구성원 등의 인력 또는 특정 인력의 기술적, 정치적 능력 및 재능 등을 말한다(양용희, 2001). 그 동안 사회복지조직은 이러한 물적 및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기관의 가치 홍보, 지역사회 자원 파악, 대상자의 욕구 파악, 잠재적 후원자 양육, 모금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김미숙 외, 2002).

사회복지조직의 자원개발 활동은 서비스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차원에서 통합적 관리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관리활동은 조직의 목표달성 및 생존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노연희, 2006; Vazquex et al., 2001). 이러한

사회복지조직의 자원개발 활동은 조직의 부족한 자원만을 보충한다는 것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가 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강철희·정무성, 2002; 김미숙 외, 2005).

사회복지조직의 자원개발은 사회체계이론, 자원의존이론, 비영리조직의 마케팅이론 등을 기반으로 논의되어져 왔다. 사회체계이론 관점에서의 자원개발은 사회복지조직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원의존이론의 경우에는 주로 의존되는 재원의 종류에 따라 조직의 전략과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직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기보다 다른 수입원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비영리조직의 마케팅 이론에서는 지속적인 기부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을 중요한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김미숙 외, 2005). 이 중 자원의존이론은 기본적으로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재정자원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조직의 활동 및 목표달성은 기본적인 재정자원을 제공하는 재정지원자(funder)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은 외부환경, 특히 재정지원자로부터 재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는가와 주요 재정지원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노연희, 2006).

2. 장애인거주시설 재원과 자원개발 필요성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영유아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된다. 2016년 기준 총 1,50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총 30,980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중 큰 서비스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486개소이며, 최근 3년 간 지원 예산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2015년 4,280억→ 2016년 4,370억→ 2017년 4,551억). 그러나 매년 신규시설 개소에 따른 예산 증가를 감안할 때 장애인거주시설 현장에서의 예산 증가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국고환원 이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기대했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 또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8). 실례로 2015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조사한 관리운영비 사용현황 모니터링 결과,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은 전체 30~40%로 이는 보조금으로 한 분기 기간의 관리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거주시설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 외에 다른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지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중요하게 대두되는 거주인의 인권, 자립생활, 탈 시설을 위한 서비스 지원 등 거주인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받고 있다. 예전에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돌봄에 역할이 치중되었다면, 지금은 거주 장애인의 자기결과 선택을 중요시하는 자립생활이념에 따라 다양한 삶의 패턴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체험홈, 자립홈 등 탈 시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또는 민간 기업 및 재단 등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고보조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재원을 확보하여 시설 운영과 거주 장애인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은 국가보조금 이외에 수익사업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이 사용된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거주 장애인의 복지욕구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후원금 등 민간자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민간자원은 시설의 생존유지, 성장,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김미숙 외, 2002). 그동안 정부자원에 크게 의존적이던 대부분의 시설에 국고 보조금을 대체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시설의 자원개발 활동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강철희 외, 2009).

그러나 각 시설의 자원개발 활동은 시설 또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낸다. 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일수록,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보다는 일반 지역에서 후원금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성철, 2000; 신준섭·최은미, 2004; 김미숙·김은정, 2005; 고경환, 2015). 또한 사회복지조직 내 구성원들의 인식은 자원개발의 효과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erman and Renz, 2004). 안수만(2014)의 연구에서는 시설의 후원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을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내부요인에는 담당인력 부족, 후원관련 지식과 교육 부족, 외부요인에는 지역 내 잠재적인 후원자들의 후원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포함되었다.

III. 조사결과

1. 양적조사

1) 실시개요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원개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에 소재한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7개 시도협회의 협조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메일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각 시설 자원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255부가 수거

되었으며, 수거된 모든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및 기술 통계 중심으로 기본 현황을 분석하였다. 서베이 조사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최근 3년 간 자원개발 현황, 자원개발 방식, 자원개발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Ⅲ-1> 조사내용

구분	주요 항목
조사대상 기관의 일반적 사항	- 설립연도, 소재지, 시설유형, 이용자 주 장애유형, 직원 수 및 이용자 수, 운영주체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조직 현황	- 전담직원 유무, 전담직원 인원, 전담직원의 성별 및 경력, 전담직원 부재 시 자원개발 업무 진행 방식, 관련 위원회 운영 여부, 홍보대사 유무 및 직업 등
자원개발 및 사용 현황	- 자원개발계획 수립 및 계획이행 여부, 최근 3년 간 모금액 현황, 지정 및 비지정 모금 현황, 기부자 수, 지원집행 내역, 자원개발 필요 영역, 기부물품 현황, 필요 물품, 후원금 방식, 기부금 대표 입금 방식 등
자원개발 방식	- 최근 3년 간 자원개발 방법 등
자원개발 활성화에 미치는 요인	- 활성화 요인, 자원개발 시 어려움, 필요한 지원 등
기부자 관리예우 방식	- 기부자 관리 예우 시행 방식 현황, 효과적인 시행 방식, 향후 시행이 필요한 방식 등
자원개발 윤리	- 자원개발에 대한 규정과 규칙 명문화 여부, 자원배분 규정 및 규칙에 대한 명문화 여부 등

2) 분석결과

(1) 일반적 사항

시설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시설 설립연도는 2000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설립된 시설이 전체 93개소(36.6%)로 가장 높았고, 1980년대부터 1999년대가 74개소(29.1%), 2010년도 이후에 설립된 시설이 56개소(22%), 1979년 이전에 설립한 시설이 31개소(12.2%)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역은 중소도시가 53.3%(136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도시 36.1%(92개소), 농어촌 10.6%(27개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시설유형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40.7%(116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37.9%(108개소)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용자 주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71.2%로 가장 높았고, 지적·뇌병변장애인 22.1%, 시각장애인 2.7%, 청각·언어장애인과 기타장애유형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 수는 현원기준으로

30명 미만 시설이 57.7%(146개소)로 전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30명에서 49명이 33.9%(86개소), 50명 이상 시설이 8.7%(2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도 현원기준으로 30명 이하 시설이 40.9%(104개소), 31명에서 50명이 32.3%(82개소), 51명에서 99명이 20.1%(51개소), 100명이상 시설이 6.7%(17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2> 일반적 사항

(단위: 개소수, %)

구분		빈도	%
설립연도	1979년 이전	31	12.2
	1980년 ~ 1999년	74	29.1
	2000년 ~ 2009년	93	36.6
	2010년 이후	56	22.0
	계	254	100.0
지역[1]	대도시	92	36.1
	중소도시	136	53.3
	농어촌	27	10.6
	계	255	100.0
시설유형 (중복응답)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시설	25	8.8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8	2.8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3	1.1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시설	108	37.9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16	40.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4	1.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0	3.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1	3.9
	계	285	100.0
이용자 장애유형	지체·뇌병변 장애인	66	22.1
	시각장애인	8	2.7
	청각·언어장애인	6	2.0
	지적·자폐성장애인	213	71.2
	기타	6	2.0
	계	299	100.0
직원수(현원) 평균(표준편차) 29.6(18.5)	30명 미만	146	57.5
	30명 ~ 49명	86	33.9
	50명 이상	22	8.7
	계	254	100.0
이용자(현원) 평균(표준편차) 45.7(34.1)	30명 이하	104	40.9
	31명 ~ 50명	82	32.3
	51명 ~ 99명	51	20.1
	100명 이상	17	6.7
	계	254	100.0

*결측치 제외

1) 본 연구는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을 구분한 기준은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포함), 중소도시는 도의 '시' 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은 도의 '군' 으로 하였다.

⑵ 자원개발관련 현황

① 전담직원 현황

전담직원이 있는 시설은 22.1%(56개소), 없는 시설은 77.9%(197개소)로 대부분의 시설이 전담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 평균 1.2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3> 전담직원 유무 및 인원

(단위: 개소수, 명, %)

구분	전담직원 유무			전담직원 인원				
	계	있음	없음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빈도(%)	253 (100.0)	56 (22.1)	197 (77.9)	53	1	3	1.2	.5

*결측치 제외

② 시설유형별 전담직원 현황[2)]

시설유형별 전담직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전담직원이 있는 비율은 22.4%(26개소), 없는 비율은 77.6%(90개소)로 대부분 전담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자폐성장애인시설은 응답기관 중 21.5%(23개소), 지체·뇌병변장애인시설은 32.0%(8개소)만이 전담직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 전담직원 현황은 아래 표<Ⅲ-4>와 같다.

<표Ⅲ-4> 시설유형별 전담직원 유무

(단위: 개소수, %)

구분	계		있음		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지체·뇌병변 장애인 시설	25	100.0	8	32.0	17	68.0
시각장애인 시설	8	100.0	4	50.0	4	50.0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3	100.0	1	33.3	2	66.7
지적·자폐성장애인시설	108	100.0	23	21.5	84	78.5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16	100.0	26	22.4	90	77.6
장애영유아거주시설	4	100.0	3	75.0	1	25.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0	100.0	0	0.0	9	100.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1	100.0	0	0.0	11	100.0

*결측치 제외

2) 각 시설유형별로 사례수가 균등하지 않아 시설유형 간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③ 전담직원 성별 및 직급

전담직원의 성별 및 직급을 조사한 결과, 여자가 57.9%(140개소), 남자가 42.1%(102개소)로 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직원의 직급은 일선담당자가 50.4%(12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부장·과장·팀장 등 중간관리자가 41.7%(101개소), 원장·국장 등 관리자 7.9%(19개소)로 조사되었다.

〈표Ⅲ-5〉 전담직원의 성별 및 직급

(단위: 개소수, %)

구분	전담직원 성별			전담직원 직급			
	계	남	여	계	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담당자
빈도(%)	242 (100.0)	102 (42.1)	140 (57.9)	242 (100.0)	19 (7.9)	101 (41.7)	122 (50.4)

*결측치 제외

④ 전담직원 경력

전담직원의 자원개발 경력을 살펴보면, 현재 재직시설의 평균 경력은 51.2개월로 나타났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총 경력은 평균 67.2개월로 조사되었다. 전담직원은 장애인거주시설 경력과 현재 재직기관 경력을 포함하여 평균 4.9년의 자원개발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6〉 전담직원의 자원개발 경력

(단위: 개월)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총 경력					현재 재직기관의 경력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빈도(%)	220	2	343	67.2	63.5	232	0	240	51.2	51.5

*결측치 제외

⑤ 전담직원 부재 시 자원개발 방법

전담직원 부재 시 자원개발 업무 진행방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72.4%(144개소)가 겸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2.6%(45개소)가 업무가 발생했을 때 업무분장을 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업무와 겸직하는 업무로는 입소자관리, 교육, 보호, 자원봉사 관리운영으로 주로 사회재활교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생활재활교사, 시설장 및 국장이 겸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영양사, 시설관리인, 운전원, 위생원, 물리치료사가 겸직하기도 하였다. 기타로는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자원개발업무를 함께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Ⅲ-7> 전담직원 부재 시 자원개발 업무 진행방식

(단위: 개소수, %)

구분	빈도	%
겸직	144	72.4
업무발생 시 업무분장에 따라 진행	45	22.6
기타	10	5.0
계	199	100.0

*결측치 제외

<겸직의 내용>

사회재활(입소자관리, 교육, 보호, 자원봉사)
행정사무 및 회계, 인사,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생활재활교사
지역사회연계 및 외부 지원사업
시설장 및 국장 겸직
홍보 등

⑥ 관련 위원회 및 홍보대사 현황

조사대상 기관의 4.0%(10개소)만이 자원개발관련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홍보대사(법인 포함)의 경우에도 4.8%(12개소)가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활동의 주요 내용은 거주인과 1:1결연, 후원금 및 후원물품 후원, 행사지원, 개인 CMS 모집, 홍보로 나타났으며, 후원을 위한 TFT를 운영하는 시설도 조사되었다. 홍보대사의 직업으로는 연예인이 가장 많았으며, 성악가, 갤러리 대표, 지역 오케스트라단장, 은행원, 시설이사, 운영위원, 입주인 보호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었다.

<표Ⅲ-8> 자원개발 관련 위원회(봉사팀) 및 홍보대사 유무

(단위: 개소수, %)

구분	위원회			홍보대사		
	계	있음	없음	계	있음	없음
빈도(%)	252 (100.0)	10 (4.0)	242 (96.0)	248 (100.0)	12 (4.8)	236 (95.2)

*결측치 제외

⑶ 자원개발 현황

① 자원개발 계획 및 실행 현황

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중 61.6%(157개소)의 시설이 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이 중 66.2%(104개소)가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Ⅲ-9> 자원개발 계획 및 시행 여부

(단위: 개소수, %)

구분	자원개발 계획 수립 여부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계	있음	없음	계	있음	없음
빈도(%)	255 (100.0)	157 (61.6)	98 (38.4)	157 (100.0)	104 (66.2)	53 (33.8)

*결측치 제외

② 전담직원 유무별 자원개발 계획 및 실행 현황

전담직원 유무에 따른 계획수립과 시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 82.1%(46개소),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 55.8%(110개소)가 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계획대비 시행 여부는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 80.4%(37개소)가,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 60.0%(66개소)가 계획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 시설에서 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비 시행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0> 전담직원 유무별 자원개발 계획 및 시행

(단위: 개소수, %)

구분	계획수립 여부			계획시행 여부		
	계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전담직원 있음	56 (100.0)	46 (82.1)	10 (17.9)	46 (100.0)	37 (80.4)	9 (19.6)
전담직원 없음	197 (100.0)	110 (55.8)	87 (44.2)	110 (100.0)	66 (60.0)	44 (40.0)

*결측치 제외

③ 자원개발(모금) 현황

시설의 자원개발 모금액(현금자원)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기 개인 기부액, 일시(비정기) 개인 기부액, 기업 및 재단, 민간단체, 모금배분기관, 모금이벤트, 기타 모금액이다. 정기 개인 기부액은 정기적으로 약정하고 3개월 이상 기부한 기부자의 금액이며, 일시(비정기) 개인 기부는 정기적으로 약정하기 않고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기부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 및 재단은 기업, 재단을 통한 기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받은 금액이며, 민간단체는 종교단체, 사회단체, 친목회, 봉사단체 등에서 기부 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모금배분기관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모금 및 배분기관으로 받은 금액이고, 모금이벤트는 일일호프, 바자회, 음악회 등 물품, 음료, 티켓 판매로 발생된 금액이다. 기타는 법인에서 주는 후원 전입금, 관공서 및 공공기관 기부금 등이 포함되었다. 최근 3년 간(2015년-2017년)의 모금액을 조사한 결과, 모금액은 평균 61,023천원이며, 이 중 정기 개인 기부자로부터 모금한 금액이 23,482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업 및 재단을 통해 모금한 금액 9,869천원, 모금배분기관으로 기부 받은 금액 8,297천원, 일시(비 정기) 개인 기부자로부터 받은 금액 7,522천원, 민간단체 모금액 4,512천원, 기타 모금액 2,587천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Ⅲ-11> 자원개발 3개년(2015년~2017년) 모금액 평균 현황

(단위: 천원)

구분	3개년(2015년-2017년) 모금액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238	0	295,970	140,531	61,023	55,627,709.5
정기 개인기부	251	0	168,767	41,692	23,482	27,422,992.2
일시(비정기)개인기부	250	0	116,918	7,858	7,522	15,195,938.3
기업 및 재단	251	0	118,336	9,667	9,869	17,019,613.5
민간단체	250	0	65,585	3,515	4,512	8,551,926.1
모금배분기관	250	0	80,399	16,168	8,297	11,229,532.1
모금이벤트	243	0	58,391	11,695	2,407	7,521,510.6
기타	244	0	99,497	10,345	2,587	10,871,446.2

*결측치 제외

④ 지역별 모금 현황

지역별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평균 67,832천원으로 가장 많은 모금액을 나타냈으며, 중소도시 평균 58,845천원, 농어촌 평균 47,870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2> 주요 지역별 모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3개년(2015년-2017년) 모금액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대도시	87	0	295,970	48,801	67,832	57,753,561.8
중소도시	127	0	265,774	46,674	58,845	55,627,709.5
농어촌	24	0	138,667	31,567	47,870	38,684,678.9

*결측치 제외

⑤ 전담직원 유무별 모금 현황

전담직원 유무에 따른 3개년 평균 모금액을 분석한 결과,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 평균 모금액은 88,912천원으로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53,089천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3> 전담직원 유무별 모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3개년(2015년-2017년) 모금액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전담직원 있음	54	0	258,629	218,273	88,912	60,337,518.4
전담직원 없음	182	0	295,970	117,795	53,089	42,050,983.6

*결측치 제외

⑥ 자원개발계획 수립여부별 자원개발 현황

자원개발 계획을 세운 시설은 평균 70,257천원, 자원개발 개획을 세우지 않은 시설은 평균 44,998천원으로 자원개발계획을 세운 시설의 평균 모금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4> 자원개발계획 수립여부별 자원개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3개년(2015년-2017년) 모금액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계획수립	151	0	295,970	167,900	70,257	60,337,518.3
계획 미 수립	87	0	217,045	102,524	44,998	42,050,983.6

*결측치 제외

⑦ 자원개발계획 시행여부별 자원개발 현황

계획대비 시행여부에 따른 평균 모금액은 자원개발 계획을 시행한 시설은 평균 80,252천원, 계획을

미 시행한 시설은 평균 50,658천원으로 자원개발 계획을 시행한 시설의 평균 모금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5> 자원개발계획 시행여부별 자원개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3개년(2015년-2017년) 모금액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계획대비 시행	100	0	295,970	191,954	80,252	64,647,805.9
계획대비 미 시행	51	0	258,629	120,665	50,658	45,333,460.1

*결측치 제외

⑧ 지정 대 비지정 자원개발 현황

시설의 자원개발 모금액을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지정기부금은 기부자가 목적성을 가지고 기부하거나 시설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에 기부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정대상자(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게 지정되는 결연기부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비지정 기부금은 기부자가 특별한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기부한 것을 말한다.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의 평균 모금액을 살펴보면, 비지정기부금이 33,648천원이며, 지정기부금은 27,044천원으로 비지정기부금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기부금 중 결연기부금은 평균 1,978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6> 3개년 지정 vs 비지정 모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3개년(2015년-2017년) 모금액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지정기부금	243	0	233,113	19,058	27,044	31,806,983.8
비지정기부금	246	0	198,158	22,049	33,648	35,387,682.6

*결측치 제외

⑨ 지역별 지정 대 비지정 모금 현황

지역별 지정과 비지정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정모금의 경우 대도시가 평균 32,494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평균 32,494천원)에서 중소도시(평균 23,541천원), 농어촌(평균 22,966천원)으로 갈수록 모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비지정 모금액도 대도시가 평균 36,863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평균 33,413천원, 농어촌 평균 23,961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지정과 비지정 모금액 모두 대도시가 가장 많은 모금 현황을 나타냈으며, 농어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17> 지역별 지정 vs 비지정 모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3개년(2015년-2017년) 모금액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대도시	지정기부금	88	0	205,179	24,697	32,494	34,910,399.2
	비 지정기부금	88	0	165,384	27,971	36,863	36,229,597.8
중소도시	지정기부금	25	0	106,516	19,485	23,541	23,919,738.7
	비 지정기부금	26	0	198,158	20,476	33,413	36,853,482.5
농어촌	지정기부금	128	0	84,723	16,467	22,966	24,814,667.2
	비 지정기부금	132	0	77,276	16,230	23,961	21,295,423.7

*결측치 제외

⑩ 기부자 현황

시설의 정기기부자와 일시(비 정기) 기부자 수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평균 기부자 수는 274명이며, 이 중 정기기부자 수는 평균 193명, 비 정기(일시) 기부자수는 평균 79명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8> 평균 기부자 현황

(단위: 명)

구분	3개년(2015년-2017년) 기부자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5	0	3,480	141	274	471.5
정기 기부자	233	0	2,784	97	193	339.0
비 정기(일시) 기부자	220	0	3,429	22	79	300.0

*결측치 제외

⑪ 지역별 기부자 현황

지역별 기부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기 기부자의 경우 중소도시가 평균 20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나타냈으며, 대도시 200명, 농어촌 109명으로 조사되었다. 비 정기 기부자는 농어촌이 평균 1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가 평균 59명으로 가장 적은 인원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일수록 정기 기부자가, 농어촌일수록 비 정기 기부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대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비 정기기부자보다 정기 기부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9> 지역별 평균 기부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3개년(2015년-2017년) 기부자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대도시	정기기부자	88	0	2,784	78	200	404.7
	비 정기기부자	87	0	3,429	20	89	375.7
중소도시	정기기부자	112	0	2,162	119	205	311.9
	비 정기기부자	111	0	924	23	59	114.8
농어촌	정기기부자	23	0	365	68	109	111.3
	비 정기기부자	22	0	2,534	26	150	534.4

*결측치 제외

⑫ 주요 요인별 기부자 현황

전담직원 유무, 계획수립여부 및 계획대비 시행여부와 관련한 3개년 기부자 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담직원이 있는 시설의 기부자 수는 평균 388명으로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평균 243명)보다 많았으며, 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부자수는 평균 333명으로 미 수립 시설(평균 172명)보다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계획을 시행한 시설의 기부자 수가 평균 368명으로 계획을 시행하지 않은 시설(평균 26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담직원, 자원개발 계획수립과 계획 시행이 기부자 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Ⅲ-20> 전담직원, 계획수립여부 및 계획대비시행여부에 따른 평균 기부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3개년(2015년-2017년) 기부자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전담직원 유무	유	49	0	2,162	284	388	381.0
	무	164	0	3,480	101	243	493.6
계획 수립 여부	수립	136	0	3,480	168	333	531.7
	미 수립	79	0	2,636	76	172	322.1
계획대비 시행 여부	계획대비 시행	92	0	3,480	222	368	567.6
	계획대비 미 시행	44	0	2,351	113	261	444.8

*결측치 제외

⑬ 주요 요인별 정기 기부자 현황

전담직원 유무, 계획수립 여부 및 계획대비 시행여부와 관련한 3개년 평균 정기 기부자 수를 조사한 결과, 전담직원이 있는 시설의 기부자 수는 평균 305명으로 전담직원이 없는 시설(평균 161명)보다 약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정기 기부자수는 평균 245

명으로 미 수립 시설(평균 104명)보다 많았다. 자원개발계획을 시행한 시설은 기부자 수가 평균 268명, 계획을 미 시행 시설은 평균 20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전담직원이 있으며, 자원개발 계획 수립과 계획에 따른 시행이 정기 기부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Ⅲ-21> 전담직원, 계획수립여부 및 계획대비시행여부에 따른 평균 정기기부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3개년(2015년-2017년) 정기기부자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전담직원 유무	유	51	0	2,162	224	305	365.6
	무	170	0	2,784	61	161	326.1
계획 수립 여부	수립	141	0	2,784	125	245	408.2
	미수립	82	0	534	60	104	118.4
계획대비 시행 여부	계획대비 시행	93	0	2,784	147	268	416.5
	계획대비 미 시행	48	0	2,230	58	200	392.1

*결측치 제외

⑭ 기부물품 현황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가장 많이 기부 받은 물품은 1순위는 식료품(부식 등)이며, 2순위 생필품, 3순위 쌀로 조사되었다. 기타 기부 받은 물품으로는 온누리 상품권, 성인용 기저귀나 물티슈와 같은 위생용품 등이 포함되었다.

<표Ⅲ-22> 기부물품 현황

(단위: 개소수,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쌀	23	9.2	29	11.6	71	30.1
식료품(부식 등)	130	51.8	74	29.6	24	10.2
생필품	82	32.7	113	45.2	40	16.9
의류	6	2.4	15	6.0	33	14.0
문화공연티켓	-	-	1	.4	7	3.0
사무기기류	-	-	-	-	5	2.1
가전제품	4	1.6	5	2.0	24	10.2
도서류	-	-	1	.4	6	2.5
학용품	-	-	1	.4	4	1.7
완구류	-	-	-	-	3	1.3
장비기계	1	.4	-	-	2	.8
가구류	1	.4	1	.4	2	.8
환경개선관련 품목(벽지, 장판 등)	1	.4	4	1.6	3	1.3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의약품	3	1.2	5	2.0	8	3.4
의료기기	-	-	1	.4	2	.8
의료비품	-	-	-	-	2	.8
계	251	100.0	250	100.0	236	100.0

*결측치 제외

⑮ 향후 필요 기부물품

향후 필요한 기부물품으로는 1, 2, 3위 모두 생필품(일상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물품, 예> 화장지, 세제, 칫솔, 샴푸, 치약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성인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이나 여행상품권 등이 포함되었다.

<표Ⅲ-23> 향후 필요 기부물품 현황

(단위: 개소수,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쌀	29	11.5	10	4.0	29	11.7
식료품(부식 등)	30	11.9	50	19.9	28	11.3
생필품	112	44.4	57	22.7	36	14.6
의류	-	-	3	1.2	8	3.2
문화공연티켓	6	2.4	8	3.2	13	5.3
사무기기류	7	2.8	26	10.4	29	11.7
가전제품	38	15.1	35	13.9	30	12.1
도서류	-	-	1	.4	-	-
학용품	-	-	2	.8	1	.4
완구류	-	-	1	.4	1	.4
장비기계	5	2.0	9	3.6	15	6.1
가구류	6	2.4	20	8.0	9	3.6
환경개선관련 품목(벽지, 장판 등)	10	4.0	12	4.8	21	8.5
의약품	2	.8	4	1.6	7	2.8
의료기기	6	2.4	8	3.2	14	5.7
의료비품	1	.4	5	2.0	6	2.4
계	252	100.0	251	100.0	247	100.0

*결측치 제외

(4) 자원집행

① 자원집행 현황

시설에서 모금(현금)된 자원의 집행은 관리운영비, 사업비(프로그램비 포함), 인건비(수당포함), 대

상자 결연비, 기능보강비,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집행액 중 사업비가 평균 21,003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운영비 15,187천원, 기능보강비 8,091천원, 인건비 5,074천원 순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기타는 재산조성비, 시설장비유지, 기타 후생경비, 특별급식비, 방한복 등 의복비, 사무비, 의료용품구입, 난방연료비, 반환금, 잡지출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이 포함되었다.

<표Ⅲ-24> 자원개발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3개년(2015년-2017년) 평균 집행액					
	N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계	230	9	317,535	48,897	57,587	49,198,130.3
관리운영비	234	0	107,656	8,651	15,187	17,793,827.3
사업비	234	0	132,132	14,352	21,003	21,170,239.5
인건비	233	0	73,756	312	5,074	10,118,783.5
대상자 결연비	234	0	31,781	88	2,059	4,454,597.6
기능보강비	233	0	148,725	6,582	8,091	17,141,355.1
기타	232	0	99,497	1,896	2,587	10,871,446.2

*결측치 제외

② 자원개발 필요 영역

자원개발을 통해 예산이 필요한 영역 중 응답이 높은 1순위는 기능보강비로 건물노후로 인한 유지보수와 관리운영비,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사비용 등이 포함되었다. 2순위는 관리운영비로 개보수 관리비용, 냉·난방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는 프로그램지원비로 개별 서비스, 사회통합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비 등이 포함되었다. 4순위는 의료비로 수술비, 장기입원비, 치료비, 간병비,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순위는 종사자 교육비로 역량강화 교육지원, 전문강사 섭외비용, 장기 및 의무 교육 지원 등을 필요로 하였다. 6순위는 주택구입비로 체험홈 등 자립생활 체험공간을 위한 주택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으며, 7순위는 기타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후관리서비스 지원비, 체험홈 입주비용,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8순위는 종사자 복리후생비로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권고지침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급여와 복지수당 지원, 적정 인원배치를 위한 인건비 등이 포함되었다.

<표Ⅲ-25> 자원개발을 통해 예산이 필요한 영역

구분	영역	구체적 내용
1순위	기능보강비	건물노후로 인한 유지보수와 관리운영비 증가, 시설과 거주인 공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바닥교체 등과 같은 공사, 재난과 같은 사고 대비용 안전장치 마련, 화재대피 시설 보강, 환경개선사업으로 장판, 도매, 도장공사의 필요, 소규모시설 전환이나 개별화 공간마련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가정식 구조변경 공사, 노후된 차량 및 장비교체 및 수리, 편의시설 확충, 리프트 휠체어 버스 구입 등

구분	영역	구체적 내용
2순위	관리운영비	시설노후로 인한 개보수 관리비용 시급, 하절기 및 동절기에 발생되는 냉난방비가 부족,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납부 등 기본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부족, 단기시설의 경우 관리운영비와 인건비 통합 예산으로 관리운영비 자체가 턱없이 부족 등
3순위	프로그램지원비	거주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개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의 어려움, 거주인의 사회적응, 사회통합과 자립지원프로그램의 확장, 신체활동 및 나들이 프로그램 확대의 비용적 한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폭넓은 경험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부족,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비 부족 등
4순위	의료비	병원 수술비, 장기입원비 및 치료비, 간병비 지원, 2차 질병으로 인한 검사비와 치료비, 건강관리에 들어가는 진료 및 검진비용, 거주인의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의견(보철관련 틀니, 인플란트 의료비 등), 응급환자 발생 시 투입되는 긴급의료비 지원비 등
5순위	종사자교육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교육의 필요성, 전문강사섭외 시 강사비 부족, 단발성 교육이 아닌 장기교육의 필요성, 인권이나 윤리와 같은 의무교육 시 지원되어야 하는 출장비 등
6순위	주택구입비	장애인 자립을 위한 체험홈 주택자금 마련으로 구입 또는 전세비용 마련이나 자립생활 체험공간 확보 등
7순위	기타	자립이나 결혼한 거주인들의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자립체험홈 입주를 위한 집기 비품비용, 건물 신개축 시 필요한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의 필요, 아동시설의 경우 학령기 졸업 후 진로나 거취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마련비 등
8순위	종사자복리후생비	보건복지부 권고지침에 맞는 급여와 제수당 지원, 적정인원배치, 시간외 수당 및 야근수당 부족분 지원, 연차보상비, 장기근속휴가제도 마련, 상해공제보험, 장기연수비와 선진시설 견학기회 마련, 관리자 특수 업무수당 등

③ 시설유형별 자원개발 필요 영역

주요 시설유형별 자원개발 필요영역을 살펴보면, 지적·자폐성장애인시설에서는 1순위가 프로그램지원비, 2순위가 기능보강비, 3순위가 의료비로 조사되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1순위는 기능보강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 관리운영비, 3순위 프로그램지원비로 조사되어 시설유형별 자원개발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 다소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표Ⅲ-26〉 시설유형별 자원개발 필요 영역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지적・자폐성장애인시설	프로그램지원비	기능보강비	의료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지원비

⑸ 자원개발 방식

① 기부자 후원방식

시설에서 기부금을 받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기부자가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한다는 응답이 33.1%(231개소)로 가장 높았고, CMS 및 자동이체 31.4%(219개소), 직접 현금전달 26.7%(186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 모금함, 바자회, 저금통, 직접 후원자를 방문해서 기부금을 받는 방식 등이 포함되었다.

<표Ⅲ-27> 기부자의 후원방식(중복응답)

(단위: 개소수, %)

구분	후원금 기부방식	
	빈도	%
직접현금전달	186	26.7
CMS 및 자동이체	219	31.4
후원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	231	33.1
지로납부	43	6.2
신용카드 및 휴대폰 납부	8	1.1
기타	10	1.4
계	697	100.0

*결측치 제외

② 정기기부자 후원방식

이 중 정기기부자의 대표적인 기부금 입금방식으로는 CMS 및 자동이체가 75.5%(191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원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이 22.9%(58개소)로 조사되었다.

<표Ⅲ-28> 정기기부자의 후원방식

(단위: 개소수, %)

구분	정기기부자의 후원금기부방식	
	빈도	%
직접현금전달	3	1.2
CMS 및 자동이체	191	75.5
후원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	58	22.9
지로납부	-	-
신용카드 및 휴대폰 납부	1	.4
기타	-	-
계	253	100.0

*결측치 제외

③ 정기기부자 후원방식

최근 3년간 정기적으로 시행한 자원개발 방법으로는 사업 프로포절 제출이 72.6%(180개소)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단 한번이라도 시행한 방식으로 시설 방문객 등을 통한 개발 58.5%(141개소), 기존 기부자의 재기부나 지인추천 개발 56.1%(138개소), 시설 자원봉사자를 통한 개발 55.9%(137개소), 시설 직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개발 54.5%(133개소), 이용자 혹은 이용자 가족을 통한 개발 53.9%(130개소), 지역사회 내 단체나 모임(종교단체, 부녀회, 봉사조직, 반상회 등)을 통한 개발 51.9%(124개소)로 조사되었다.

<표Ⅲ-29> 자원개발 방식 현황

(단위: 개소수, %)

구분	3개년(2015년~2017년)간 자원개발 방식			
	계	정기시행	1회라도 시행	미시행
인터넷을 통한 요청(홈페이지 게시 및 배너 홍보)	242 (100.0)	97 (40.1)	79 (32.6)	66 (27.3)
대중매체(TV, 신문, 지역신문, 광고, 잡지)를 통한 개발	231 (100.0)	13 (5.6)	31 (13.4)	187 (81.0)
해피빈, 다음 펀딩 등 온라인 모금을 통해 개발	238 (100.0)	41 (17.2)	81 (34.0)	116 (48.7)
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개발	237 (100.0)	57 (24.1)	108 (45.6)	72 30.4)
지역사회 내 단체나 모임을 통한 개발 (종교단체, 부녀회, 봉사조직, 반상회 등)	239 (100.0)	47 (19.7)	124 (51.9)	68 (28.5)
구청 또는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통한 개발	232 (100.0)	14 (6.0)	72 (31.0)	146 (62.9)
시설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개발	245 (100.0)	85 (34.7)	137 (55.9)	23 (9.4)
시설에 견학한 방문객 등을 통한 개발	241 (100.0)	57 (23.7)	141 (58.5)	43 (17.8)
기존 기부자에게 재기부나 지인추천 개발	246 (100.0)	86 (35.0)	138 (56.1)	22 (8.9)
이용자 혹은 이용자 가족을 통한 개발	241 (100.0)	58 (24.1)	130 (53.9)	53 (22.0)
시설 직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개발	244 (100.0)	93 (38.1)	133 (54.5)	18 (7.4)
지역상가, 학교, 단체, 은행, 대형마트 등 저금통(모금함) 설치	242 (100.0)	77 (31.8)	62 (25.6)	103 (42.6)
특별모금행사(바자회, 일일호프, 상품판매, 후원의 밤, 음악회 등) 개최	242 (100.0)	58 (24.0)	70 (28.9)	114 (47.1)
거리모금	231 (100.0)	2 (.9)	23 (10.0)	206 (89.2)
사업 프로포절(기업,단체,모금배분기관 대상) 제출	248 (100.0)	180 (72.6)	63 (25.4)	5 (2.0)
직원 및 부서별 개별 목표 모금액 할당	231 (100.0)	18 (7.8)	34 (14.7)	179 (77.5)

*결측치 제외

④ 대표 자원개발 방식

시설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원개발 방식 1순위로는 사업프로포절(기업, 단체, 모금배분기관 대상) 제출(26.2%, 61개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설 직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개발 24.0%(56개소), 기존 기부자에게 재기부나 지인추천 개발 8.2%(19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Ⅲ-30> 대표 자원개발 방식

구분	구체적 내용
1순위	사업프로포절(기업, 단체, 모금배분기관 대상) 제출
2순위	시설 직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개발
3순위	기존 기부자에게 재기부나 지인추천 개발

(6) 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① 자원개발 활성화 요인

자원개발 활성화 요인으로는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확신'이 75.4%(190개소)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미지' 73.8%(186개소), '기존 기부자와의 신뢰성' 73.7%(185개소), '자원개발 담당자의 업무 적극성' 71.1%(180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Ⅲ-31> 자원개발 활성화 요인

(단위: 개소수, %)

구분	계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자원개발 전담부서와 전담자 유무	252 (100.0)	3 (1.2)	10 (4.0)	105 (41.7)	134 (53.2)
자원개발 전담자의 인원 수	252 (100.0)	2 (.8)	33 (13.1)	144 (57.1)	73 (29.0)
자원개발 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	253 (100.0)	1 (.4)	23 (9.1)	150 (59.3)	79 (31.2)
자원개발 담당자의 관련 업무 지식과 기술	253 (100.0)		7 (2.8)	114 (45.1)	132 (52.2)
자원개발 담당자의 업무 적극성	253 (100.0)		3 (1.2)	70 (27.7)	180 (71.1)

구분	계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자원개발 담당자의 시설 내 직위	251 (100.0)	2 (.8)	71 (28.3)	122 (48.6)	56 (22.3)
자원개발 담당자의 시설에 대한 믿음	252 (100.0)		4 (1.6)	102 (40.5)	146 (57.9)
자원개발 담당자의 개인 네트워크	253 (100.0)	3 (1.2)	22 (8.7)	140 (55.3)	88 (34.8)
전체 직원의 후원인식, 의지, 참여	252 (100.0)	1 (.4)	8 (3.2)	76 (30.2)	167 (66.3)
지역사회와의 지리적 접근성	252 (100.0)	5 (2.0)	22 (8.7)	134 (53.2)	91 (36.1)
시설과 지역과의 네트워크	252 (100.0)	1 (.4)	3 (1.2)	95 (37.7)	153 (60.7)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미지	252 (100.0)	1 (.4)		65 (25.8)	186 (73.8)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여도	252 (100.0)	1 (.4)	23 (9.1)	141 (56.0)	87 (34.5)
시설 외관과 환경의 열악성	252 (100.0)	11 (4.4)	83 (32.9)	123 (48.8)	35 (13.9)
시설의 규모	252 (100.0)	8 (3.2)	111 (44.0)	108 (42.9)	25 (9.9)
시설의 종교적 성향	252 (100.0)	34 (13.5)	130 (51.6)	68 (27.0)	20 (7.9)
시설장의 자원개발 인식과 의지	252 (100.0)		3 (1.2)	109 (43.3)	140 (55.6)
시설장과 지역사회의 유대성	253 (100.0)	1 (.4)	11 (4.3)	120 (47.4)	121 (47.8)
지역주민이 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확신	253 (100.0)	1 (.4)	3 (1.2)	58 (23.0)	190 (75.4)
시설 이용자의 특성(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등)	252 (100.0)	16 (6.3)	73 (29.0)	121 (48.0)	42 (16.7)
자원개발 목적(명분)	251 (100.0)		6 (2.4)	89 (35.5)	156 (62.2)
자원개발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요청	252 (100.0)		5 (2.0)	122 (48.4)	125 (49.6)
시설 사업에 대한 홍보	251 (100.0)		4 (1.6)	135 (53.8)	112 (44.6)
다양한 자원개발 프로그램 (예, 나눔교육, 결연안내 등)	251 (100.0)		10 (4.0)	143 (57.0)	98 (39.0)
효율적인 자원개발 업무 시스템 (계획수립, 역할, 업무분장 등의 명문화 및 규정 혹은 규칙에 의한 실행)	250 (100.0)	1 (.4)	11 (4.4)	137 (54.8)	101 (40.4)
기부자 전산 관리 시스템(국가정보시스템 외에 별도 기부자 전산관리 프로그램 등)	251 (100.0)	5 (2.0)	41 (16.3)	134 (53.4)	71 (28.3)
기부자 관리예우에 대한 시설 내 정책(규정 및 명문화에 의한 업무수행)	251 (100.0)	1 (.4)	10 (4.0)	165 (65.7)	75 (29.9)
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249 (100.0)	1 (.4)	15 (6.0)	154 (61.8)	79 (31.7)
기존 기부자와의 신뢰성	251 (100.0)		3 (1.2)	63 (25.1)	185 (73.7)
관할 담당공무원과 지자체의 후원인식	251 (100.0)	2 (.8)	20 (8.0)	132 (52.6)	97 (38.6)
자원개발 경쟁 (전문기관, 시설 간)	250 (100.0)	9 (3.6)	95 (38.0)	119 (47.6)	27 (10.8)

*결측치 제외

② 자원개발 시 어려운 점

자원개발 시 어려운 점으로 1순위가 전담인력부재 47.4%(120개소), 2순위가 자원개발관련 지식, 기술부족 31.8%(78개소), 3순위가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한 관심부재 22.6%(53개소)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담인력 부재에서는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보다 관리에 투여되는 업무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타 업무의 병행으로 인한 업무과중 등으로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자원개발 지식, 기술부족에서는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필요, 시설과 환경에 맞는 적용 가능한 내용의 부재가 조사되었다.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한 관심부족으로는 지역사회에 오래 있었으나 시설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없고, 이용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의 이해와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역사회와 시설 간의 접근성 어려움, 기부금세제 등 각종 혜택 부족, 대형 법인 인식, 시설장이 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담당자의 짧은 경력, 시설 담당자 간 정보 공유 부족이 포함되었다.

〈표Ⅲ-32〉 자원개발 시 어려운 점

구분		구체적 내용
1순위	전담인력 부재	기본적으로 시설의 인력부족, 타 업무 병행으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자원개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음, 고유업무량이 많아 후순위로 밀림 등
2순위	자원개발관련 지식, 기술 부족	기초적인 개념과 이해에 대한 지식 및 기술부족,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 지방일수록 교육의 기회가 적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나 지역사회에 적합한 방법과 형태의 적용가능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등
3순위	지역사회내 시설에 대한 관심 부재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 설립한지 오래 되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시설을 알지 못하는 것, 법인과 시설의 주무관청이 다름으로 인한 지역 내의 관심과 지원의 배제 등

③ 자원개발 시 필요한 지원

자원개발 시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1순위가 전담인력배치(45.2%, 113개소), 2순위가 자원개발 지식 및 기술관련 교육 지원(29.9%, 73개소), 3순위가 기부금 세제 등 각종 해택 확대(21.6%, 48개소)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 인력 기준에 자원개발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전담인력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력자 위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순위 자원개발 지식 및 기술 관련 교육지원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기적인 자원개발 교육지원이 필요하며, 교육 자료와 자원개발 매뉴얼 지원에 대한 욕구도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교육 시스템의 필요가 제기되었다. 3순위 기부금 세제 등 각종 혜택 확대에서는 소득공제 상향조정 또는 100% 세제 확대가 필요, 법정기부금 단체 전환, 그 밖에 기부문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시설 내 각종 혜택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의지와 인식교육,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 기부문화 관련 교육 사업 추진, 자원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등이 조사되었다.

〈표Ⅲ-33〉 자원개발 시 필요한 지원

구분		구체적 내용
1순위	전담인력 배치	보건복지부 인력 기준에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력자 위주의 전담인력 지원 등
2순위	자원개발 지식 및 기술 관련 교육 지원	정기적인 자원개발 교육 지원, 자원개발 스토리텔링, 프로포절 작성 등과 같은 기술 교육 지원, 교육자료 및 매뉴얼 지원, 교육후 정기점검까지 지원하는 교육시스템 필요 등
3순위	기부금 세제 등 각종혜택 확대	소득공제 상향조정 또는 100% 세제 확대 필요, 법정기부금 단체 전환, 그 밖에 기부문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시설내 각종 혜택제도 마련, 기부금세제와 각종 혜택 확대를 위한 슈퍼비젼 필요

(7) 기부자 관리예우

① 기부자 관리예우 시행 여부

기부자 관리예우 시행 여부와 방법을 조사한 결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연말 공제에 대한 정보제공(98.3%, 236개소)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보고 및 기부금 사용내역 안내 96.0%(242개소), 시설 소식 및 안내 94.4%(236개소), 시설행사나 프로그램에 초대 85.3%(203개소), 절기(새해, 연말, 명절 등)인사 80.3%(200개소), 첫 기부 감사 메시지 74.2%(187개소) 순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표Ⅲ-34〉 기부자 관리예우 시행 여부

(단위: 개소수, %)

구분	시행여부		
	계	예	아니오
첫 기부 감사메시지	252 (100.0)	187 (74.2)	65 (25.8)
기부 해지 매세지	246 (100.0)	110 (44.7)	136 (55.3)
정기 기부금 입금 감사메시지	249 (100.0)	148 (59.4)	101 (40.6)
기부자 기념일(기부자 개인적 기념일, 기부 기념일 등 포함) 축하	246 (100.0)	46 (18.7)	200 (81.3)
절기(새해, 연말, 명절 등) 인사	249 (100.0)	200 (80.3)	49 (19.7)

구분	시행여부		
	계	예	아니오
시설 소식 및 안내	250 (100.0)	236 (94.4)	14 (5.6)
사업보고 및 기부금 사용내역 안내	252 (100.0)	242 (96.0)	10 (4.0)
기부자들로 구성된 소모임이나 동아리 운영(인터넷 활동 포함)	238 (100.0)	29 (12.2)	209 (87.8)
기부자의 밤(감사의 밤) 등과 같은 행사	239 (100.0)	159 (66.5)	80 (33.5)
기부자 포상	239 (100.0)	155 (64.9)	84 (35.1)
기부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238 (100.0)	21 (8.8)	217 (91.2)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연말공제 정보를 제공	240 (100.0)	236 (98.3)	4 (1.7)
결연대상자에 대한 소식전달, 만남, 기관방문	237 (100.0)	139 (58.6)	98 (41.4)
시설행사나 프로그램에 초대	238 (100.0)	203 (85.3)	35 (14.7)
기타	1 (100.0)	1 (100.0)	

*결측치 제외

② 기부자 관리예우 시행방식

기부자 관리예우 시행방식을 조사한 결과, 첫 기부 감사 메시지 방식은 문자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문자와 전화, 문자와 우편, 문자, 전화, 우편을 동시에 중복응답한 시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부 해지 메시지 방식으로는 문자가 대표적이었으나 문자와 전화, 문자와 우편을 중복으로 응답한 시설도 있었다. 정기 기부금 입금 감사메시지 방식으로는 문자가 대표적이며 전화와 우편, 문자와 전화의 중복응답도 다수 나타났다. 또한 소식지를 통해 정기 기부금 입금 감사를 표현한다는 시설도 있었다. 연 1회 선물 혹은 연 2회 서신을 이용한 방식도 기타 의견으로 포함되었다. 기부자 기념일 방식으로는 문자가 대표적이었으나 문자와 전화, 문자와 우편, 문자, 전화, 우편을 동시에 중복응답한 시설도 다수였다. 생일카드나 기념일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방식도 조사되었다. 절기인사 방식으로는 우편방식이 대표적이었으며, 문자와 전화, 문자와 우편이 중복 응답되었고, 일반후원자에게는 기념품을, 고액후원자에게는 선물을 제공한다고 조사되었다. 주로 소식지 활용 방식이 많았으며, 온라인으로 서신 발송이나 연하장, 성탄카드 발송 등의 방식이 조사되었다. 시설소식 및 안내는 우편방식이 대표적이었으며, 문자와 우편방식도 병행되고 있었다. 사업보고 및 기부금 사용 내용은 우편이 대표적인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기부자 관리예우 시행방식은 아래 <표 Ⅲ-35>와 같다.

<표Ⅲ-35> 기부자 관리예우 시행방식

구분	시행방식	
	대표방식	기타 방식
첫 기부 감사메시지	문자	문자와 전화, 문자와 우편, 문자와 전화 그리고 우편 방식으로 한다는 중복 응답도 다수, 소식지나 대면방식으로 시행, 신규 기부자에게 기념품 발송 등
기부 해지 메세지	문자	문자와 전화, 문자와 우편 중복응답 다수
정기 기부금 입금 감사메시지	문자	전화와 우편, 문자와 전화 중복응답 다수, 소식지를 이용하여 우편발송 응답도 다수, 연1회 혹은 2회 서신이나 기념품 발송 등
기부자 기념일(기부자 개인적 기념일,기부기념일 등 포함) 축하	문자	문자와 전화, 문자와 우편, 문자와 전화 그리고 우편 방식으로 한다는 중복 응답도 다수, 생일카드 및 축하카드 발송 등
절기(새해, 연말, 명절 등) 인사	우편	문자와 전화, 문자와 우편 방식으로 한다는 중복 응답도 다수, 일반후원자에게는 기념품, 고액후원자에게는 선물 전달, 소식지, 온라인으로 서신발송, 연하장 및 성탄카드는 거주인 생활소식으로 발송 등
시설 소식 및 안내	우편	문자와 우편발송 응답도 다수, 홈페이지나 소식지, 밴드, 이메일을 통한 방식 등
사업보고 및 기부금 사용내역 안내	우편	홈페이지, 소식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등

③ 효과적인 기부자 관리예우 방식

효과적인 기부자 관리예우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1순위가 첫 기부 감사메시지, 2순위가 시설 소식 및 안내, 3순위가 정기 기부금 입금 감사메시지로 조사되었다.

<표Ⅲ-36> 효과적인 기부자 관리예우 방식

구분	구체적 내용
1순위	첫 기부 감사메시지
2순위	시설소식 및 안내
3순위	정기 기부금 입금 감사메시지

④ 향후 필요한 기부자 관리예우 방식

향후 필요한 기부자 관리예우방식으로는 기부자 기념일(개인 기념일, 첫 기부 일자 등)의 축하가 1순위로 가장 높았고 첫 기부 감사메시지와 기부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가 각각 2위와 3위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는 기념품 제작 배포나 감사 선물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물질적인 것보다는 기부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동기 부여, 기부금 사용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 기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메시지와 프로그램의 구성, 그리고 기부에 대한 감사와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Ⅲ-37> 향후 필요한 기부자 관리예우 방식

구분	구체적 내용
1순위	기부자기념일(기부자 개인적 기념일, 기부기념일 등 포함) 축하
2순위	첫 기부 감사
3순위	기부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⑧ 자원개발 윤리

① 자원개발 관련 규정 및 규칙 유무

자원개발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 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62.3%(157개소)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배분 규정 명문화 유무에서도 77.7%(192개소)가 없다고 조사되었다. 관련 규정과 규칙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 운영 관련 규정 및 규칙에 자원개발 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형식을 갖춘 부분도 다수 나타나 대부분 시설이 자원개발과 관련된 규정과 규칙이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Ⅲ-38> 자원개발 관련 규정 및 규칙 유무

(단위: 개소수, %)

구분	자원개발에 대한 규정 및 규칙 유무			자원배분에 대한 규정 및 규칙 유무		
	계	있음	없음	계	있음	없음
빈도(%)	252 (100.0)	95 (37.3)	157 (62.3)	247 (100.0)	55 (22.3)	192 (77.7)

*결측치 제외

2. 초점집단면접

1) 실시개요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원(모금) 개발 현황 및 욕구조사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원개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에는 지체·뇌병변, 지적·자폐성, 시각 각 1명, 중증 2명 등 시설 유형별 담당자 총 5명이 참석하였으며, 총 1회 진행되었다. 면접은 책임연구자의 진행 하에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요 면접 질문에는 자원개발(모금)의 중요성, 자원개발(모금)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자원개발(모금)과 관련하여 협회의 역할과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참석자의 일반적 사항은 아래 <표Ⅲ-39>와 같다.

<표Ⅲ-39> 전문가 그룹 인터뷰 참여자

번호	시설유형	성별	직급	경력
A	지체 · 뇌병변	여	팀장	5년
B	중증	여	사원	1.2년
C	지적 · 자폐성	여	국장	7년
D	시각	남	생활재활교사	1.1년
E	중증	여	팀장	4.11년

2) 분석결과

초점집단면접 분석은 면접질문에 대한 주요 응답내용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1)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원개발(모금) 필요성과 중요성

○ 보조금(운영비 및 사업비) 보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원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비나 운영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건물이 노후 될수록 더 많은 관리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집단보다는 개별화 프로그램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개별프로그램 진행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간식, 필요 물품 등)에 제한이 따른다고 하였다.

"우리는 지어진지 8년이 되다보니 여기 터지고 저기 세고, 약간씩 고치는 것들이 몇 백만 원 들어요. 시설 보수 및 관리운영비만으로도 많은 돈이 필요하고, 예산이 한정적이라 있는 돈은 제한적이고, 결국 필요한 돈은 모금을 해서 메꿔야 해요, 모금담당자인 제 역할은 기관에서 점점 더 커진다고 느끼고 있어요."(참여자 B)

"대상자분들이 인지가 있는 분들이고 대다수 개별욕구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사업비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간식비나 차비 지원이 어려워 간식이 별도로 지원되거나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참여자 D)

○ 서비스 질의 제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시설 밖의 경험과 지역사회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용자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정당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자원(개별후원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후원금이 미약하던 시절에는 물놀이 가려고 해도 시설 앞 강 밖에 갈 수 없는데 3년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후원 받는 것들이 생겨서 처음으로 워터파크를 갔었어요. 정말 거주인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았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했지요. 거주인들이 '앞으로는 강에 가지 않겠다. 워터파크 가겠다' 라는 욕구를 많이 보였어요. 경험을 해야 아는 것과 즐거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아동의 경우는 시설에서의 경험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전체의 경험이 돼요. 그래서 경험이 매우 중요하죠, 경험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후원금은 반드시 필요해요."(참여자 C)

"처음 어르신 모시고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그때 어르신이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설의 경우는 개별당 개인 후원금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개인수당이 있어서 지역사회에 나가 본인이 그 돈으로 선택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죠."(참여자 A)

○ 이용자별 필요 물품 확보

현재 이용자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혹은 선택해야 하는 생필품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특히 장애정도가 중한 이용자의 경우 건강과 직결되는 기저귀나 보조 의료물품에 대한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중증시설의 경우는 기저귀 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일 년에 몇 천 만원까지... 거주인들에게 직접 결연하는 후원을 요청하는데 거주인마다 치료비, 기저귀 등 쓰임도 다르고 개별 주요 생필품도 달라요. 개인 돈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절반은 개인 돈도 없고 보조치료기 등이 1인당 2-3개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 비용이 비싸서 개인 돈이 없는 분들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시설 후원금보다 결연후원에 의존하고 있어요."(참여자 D)

(2) 자원개발(모금) 시 어려움과 필요 지원

○ 전담인력 확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원개발 시 어려운 점으로 전담인력의 부재를 들었다. 자원개발 담당자가 있다하더라도 겸직을 하고 있어 다른 시급한 업무처리로 인해 자원개발 업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으며, 집중할 수 있는 업무시간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모금교육을 갔는데 강사분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에 다른 분이 오시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즉, 1년이 지나면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거나 변경되거나 한다는 이야기죠."(참여자 D)

"교육을 받을 때는 정말 적용해야 할 것들이 생각이 나서 포스트잇에 잔뜩 적어놔요. 그러나 다시 시설에 가면 다른 일들에 밀려서 실제 할 수가 없죠."(참여자 E)

○ 지속적인 자원개발 교육체계 마련

장애인거주시설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교육도 중요하지만 조직 전체가 자원개발(모금)의 이해와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을 하고 나면 직원들이 자원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조직 내 네트워킹의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2012년 상반기에 자원개발교육을 받은 후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모금에 대한 매우 필요성을 느낀다.' 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교육 후 직원들의 의식이 깨어져 있었지요. 그러나 교육 후 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즉시 실행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실행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E)

○ 시설의 자원개발 환경 개선

참여자들은 전담인력 배치도 필요하지만 자원개발의 경우 조직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협업해야 하는 과제라고 응답하였다. 기본적으로 사업담당자, 다른 부서와의 연계가 중요하며, 조직적 차원에서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 나보다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원개발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담당자가 모금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업 진행의 성공 확률이 높아요. 이번 바자회 때 직원의 인맥이 활용되어 물품이 연계되었어요. 이렇듯 직원의 인프라에서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참여자 D)

"혼자 진행하기 어렵죠. 목표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하는 그런 협업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해요."(참여자 E)

"우리는 각 팀에서 한 명씩 참여하는 자원개발 TFT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참여자 A)

○ 지역사회의 기부에 대한 인식 변화

참여자들은 기부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물품기부와 관련한 지역사회 또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과 관련한 에피소드들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인식이 중요해요. 특히 우리 지역 주변은 아직까지 옛날 복지에 머물러 있어요. 후원받으러 가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주곤 해요. 헌옷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태가 심각한 것들은 거절을 하는데 오히려 '배부른 시설'이라는 소문만 내죠, '줘도 싫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는 간식을 거절하면 '지네들 입맛에 맞게 골라 받는 시설' 다는 소문도 돌았어요."(참여자 C)

"속옷 세트가 40박스 들어왔는데 어떤 박스는 썩어 있었고, 박스 안의 물품도 손상이 심했어요.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쓰지 못할 것들까지 다 주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도 물품을 제대로 확인하고 수령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참여자 E)

(3) 자원개발(모금) 관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역할과 지원

○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지원**

참여자들은 전담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원개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법 개정에 선두해 줄 것을 원하고 있었다.

"자원개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생활재활교사에서 직무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생활재활교사가 해야 될 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원개발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한 인력지원이 필요해요."(참여자 E)

"전담인력이 있어야 자원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전담인력이 없고 자원개발은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니...겸직이라는 방식으로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죠."(참여자 C)

"보조금을 더 많이 주든지 인원 확충을 해 주든지 해야 해요. 자원개발은 전담직원이 있고 책임질 부서가 있어야 해요."(참여자 D)

○ **자원개발에 대한 교육 지원**

별도의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성과에 필요한 것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효율적 실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개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조직원 전체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자원개발의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기본교육과 자원개발 형태별 기술과 역할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업무를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담당자가 후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시간의 효율성과 성공활률이 높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후원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죠. 동료직원이 좀더 관심을 갖고 주변의 소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은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한 사례와 행동요령등이 조직에 공유되면 후원개발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참여자 D)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표수치 잡는 것도 어려우므로 같이 하는 그런 협업의 환경이 필요해요. 교육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요"(참여자 E)

○ 기업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성 확보

지역 개별 거주시설의 브랜드와 사업역량으로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감당하기 어렵고 기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협회 차원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해와 활동 이력, 제안을 주도하며, 부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관리는 시설에서 진행하고, 기업에 대한 홍보와 사회공헌에 대한 외부 노출은 협회에서 직접 홍보를 해주길 원하였다.

"올해 가장 큰 타격은 정기적으로 진행된 00기업의 직원 자원봉사활동이 중단되었어요. 본사방침으로 봉사가 중단되어 지역별 개별 사업장의 봉사도 중단된 거죠. 본사차원으로 이런 정보와 연계성에 대한 부분은 중앙회에서 지원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연합적으로 지역 기업들과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참가자A)

"자원봉사자를 통해 후원하는 것으로 개발까지 진행하는데 그런 곳들은 프로그램과 홍보효과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더라도 홍보는 시설이 작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해주면 좋겠다."(참가자D)

"작은 시설들은 기업과 활동하기 어렵다. 신입직원 교육으로 진행된 봉사활동도 본사 방침으로 중단되었어요. 체감 상으로 기업의 자원봉사가 줄고 있는 듯한데, 아마 52시간 근무시간제 도입 영향이 아닐까 해요. 기업의 흐름을 알아야 대처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업 정보, 특히 사회공헌에 대한 정보나 흐름을 공유해 주었으면 해요"(참여자 E)

Ⅳ. 결론 및 제언

1. 결과요약

장애인거주시설 자원(모금)개발 현황 및 욕구조사의 결과요약은 다음과 같다. 자원개발관련 중 전담직원 현황에서는 전담직원이 있는 시설은 22.1%(56개소), 없는 시설은 77.9%(197개소)로 대부분의 시설이 전담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 여자가 57.9%(140개소), 남자가 42.1%(102개소)로 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직원의 직급은 일선담당자가 50.4%(122개소)로 가장 많았다. 전담직원의 자원개발 경력은 장애인거주시설 경력과 현재 재직기관 경력을 포함하여 평균 4.9년의 자원개발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직원 부재 시 자원개발 업무 진행방식은 전체 72.4%(144개소)가 겸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2.6%(45개소)가 업무가 발생했을 때 업무분장을 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업무와 겸직하는 업무로는 입소자관리, 교육, 보호, 자원봉사 관리운영으로 주로 사회재활교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 관련 위원회와 홍보대사 현황은 조사대상 기관의 4.0%(10개소)만이 자원개발관련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홍보대사(법인 포함)의 경우에도 4.8%(12개소)가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활동의 주요 내용은 거주인과 1:1결연, 후원금 및 후원물품 후원, 행사지원, 개인 CMS 모집, 홍보로 나타났으며, 후원을 위한 TFT를 운영하는 시설도 조사되었다.

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중 61.6%(157개소)의 시설이 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이 중 66.2%(104개소)가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담직원 유무에 따른 계획수립과 시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 82.1%(46개소),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 55.8%(110개소)가 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계획대비 시행 여부는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 80.4%(37개소)가,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 60.0%(66개소)가 계획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 시설에서 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비 시행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의 자원개발 모금액 조사에서는 평균 61,023천원이며, 이 중 정기 개인 기부자로부터 모금한 금액이 23,482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업 및 재단을 통해 모금한 금액 9,869천원, 모금배분기관으로 기부 받은 금액 8,297천원, 일시(비 정기) 개인 기부자로부터 받은 금액 7,522천원, 민간단체 모금액 4,512천원, 기타 모금액 2,587천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평균 67,832천원으로 가장 많은 모금액을 나타냈으며, 중소도시 평균 58,845천원, 농어촌 평균 47,870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담직원 유무로 확인한 결과는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 평균 모금액은 88,912천원으로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53,089천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 계획을 세운 시설은 평균 70,257천원, 자원개발 개획을 세우지 않은 시설은 평균 44,998천원으로 자원개발계획을 세운 시설의 평균 모금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계획대비 시행여부에 따른 평균 모금액은 자원개발 계획을 시행한 시설은 평균 80,252천원, 계획을 미 시행한 시설은 평균 50,658천원으로 자원개발 계획을 시행한 시설의 평균 모금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의 평균 3년간 모금액은 비지정기부금이 33,648천원이며, 지정기부금은 27,044천원으로 비지정기부금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기부금 중 결연기부금은 평균 1,978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지정과 비지정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정과 비지정 모금액 모두 대도시가 가장 많은 모금 현황을 나타냈으며, 농어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 현황 조사 결과,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평균 기부자 수는 274명이며, 이 중 정기기부자 수는 평균 193명, 비정기(일시) 기부자수는 평균 79명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일수록 정기 기부자가, 농어촌일수록 비 정기 기부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주요 요인별 기부자 현황은 전담직원이 있으며, 자원개발 계획 수립과 계획에 따른 시행이 정기 기부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가장 많이 기부 받은 물품은 1순위는 식료품(부식 등)이며, 2순위 생필품, 3순위 쌀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필요한 기부물품으로는 1, 2, 3위 모두 생필품이 조사되었다.

시설에서 모금(현금)된 자원의 집행액 중 사업비가 평균 21,003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운영비 15,187천원, 기능보강비 8,091천원, 인건비 5,074천원 순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자원개발을 통해 예산이 필요한 영역 중 응답이 높은 1순위는 기능보강비로 건물노후로 인한 유지보수와 관리운영비,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사비용 등이 포함되었다. 2순위는 관리운영비로 개보수 관리비용, 냉·난방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는 프로그램지원비로 개별 서비스, 사회통합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비 등이 포함되었다. 유형별 자원개발필요 영역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시설에서는 1순위가 프로그램지원비, 2순위가 기능보강비, 3순위가 의료비로 조사되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1순위는 기능보강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 관리운영비, 3순위 프로그램지원비로 조사되어 시설유형별 자원개발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 다소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에서 기부금을 받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기부자가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한다는 응답이 33.1%(219개소)로 가장 높았고, CMS 및 자동이체 31.4%(219개소), 직접 현금전달 26.7%(187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정기기부자의 대표적인 기부금 입금방식으로는 CMS 및 자동이체가 75.7%(191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원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이 22.9%(58개소)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정기적으로 시행한 자원개발 방법으로는 사업 프로포절 제출이 72.6%(180개소)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단 한번이라도 시행한 방식으로 시설 방문객 등을 통한 개발 58.5%(141개소), 기존 기부자의 재기부나 지인추천 개발 56.1%(138개소), 시설 자원봉사자를 통한 개발 55.9%(137개소), 시설 직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개발 54.5%(133개소), 이용자 혹은 이용자 가족을 통한 개발 53.9%(130개소), 지역사회 내 단체나 모임(종교단체, 부녀회, 봉사조직, 반상회 등)을 통한 개발 51.9%(124개소)로 조사되었다. 시설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원개발

방식 1순위로는 사업프로포절(기업, 단체, 모금배분기관 대상) 제출(26.2%, 61개소)이 가장 많았다.

자원개발을 활성화하는 요인으로는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확신'이 75.4%(190개소)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미지' 73.8%(186개소), '기존 기부자와의 신뢰성' 73.7%(185개소), '자원개발 담당자의 업무 적극성' 71.1%(180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원개발 시 어려운 점으로 1순위가 전담인력부재 47.4%(120개소), 2순위가 자원개발 관련 지식, 기술부족 31.8%(78개소), 3순위가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한 관심부재 22.6%(53개소)로 조사되었다. 자원개발 시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1순위가 전담인력배치(45.2%, 113개소), 2순위가 자원개발 지식 및 기술관련 교육 지원(29.9%, 73개소), 3순위가 기부금 세제 등 각종 해택 확대(21.6%, 48개소)로 조사되었다.

기부자 관리예우 시행 여부와 방법을 조사한 결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연말 공제에 대한 정보 제공(98.3%, 236개소)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보고 및 기부금 사용내역 안내 96.0%(242개소), 시설 소식 및 안내 94.4%(236개소), 시설행사나 프로그램에 초대 85.3%(203개소), 절기(새해, 연말, 명절 등)인사 80.3%(200개소), 첫 기부 감사 메시지 74.2%(187개소) 순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기부자 관리예우 시행방식을 조사한 결과, 첫 기부 감사 메시지 방식은 문자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문자와 전화, 문자와 우편, 문자, 전화, 우편을 동시에 중복응답한 시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부 해지 메시지 방식으로는 문자가 대표적이었으나 문자와 전화, 문자와 우편을 중복으로 응답한 시설도 있었다. 정기 기부금 입금 감사메시지 방식으로는 문자가 대표적이며 전화와 우편, 문자와 전화의 중복응답도 다수 나타났다. 또한 소식지를 통해 정기 기부금 입금 감사를 표현한다는 시설도 있었다. 연 1회 선물 혹은 연 2회 서신을 이용한 방식도 기타 의견으로 포함되었다. 기부자 기념일 방식으로는 문자가 대표적이었으나 문자와 전화, 문자와 우편, 문자, 전화, 우편을 동시에 중복응답한 시설도 다수였다. 생일카드나 기념일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방식도 조사되었다. 절기인사 방식으로는 우편방식이 대표적이었으며, 문자와 전화, 문자와 우편이 중복 응답되었고, 일반후원자에게는 기념품을 고액후원자에게는 선물을 제공한다고 조사되었다. 주로 소식지 활용방식이 많았으며, 온라인으로 서신 발송이나 연하장, 성탄카드 발송 등의 방식이 조사되었다. 시설소식 및 안내는 우편방식이 대표적이었으며, 문자와 우편방식도 병행되고 있었다. 사업보고 및 기부금사용 내용은 우편이 대표적인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효과적인 기부자 관리예우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1순위가 첫 기부 감사메시지, 2순위가 시설 소식 및 안내, 3순위가 정기 기부금 입금 감사메시지로 조사되었다. 향후 필요한 기부자 관리예우방식으로는 기부자 기념일 축하가 1순위로 가장 높았고 첫 기부 감사메시지와 기부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가 각각 2위와 3위로 나타났다.

자원개발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 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62.3%(157개소)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배분 규정 명문화 유무에서도 77.7%(192개소)가 없다고 조사되었다. 관련 규정과 규칙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 운영 관련 규정 및 규칙에 자원개발 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형식을 갖춘 부분도 다수 나타나 대부분 시설이 자원개발과 관련된 규정과 규칙이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원(모금) 개발 현황 및 욕구조사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자원개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원개발(모금)의 필요성과 중요성으로는 보조금(운영비 및 사업비) 보전, 서비스질의 제고, 이용자별 필요물품 확보 등이며, 자원개발(모금) 시 어려움과 필요지원으로는 전담인력 확보, 지속적인 자원개발 교육체계 마련, 시설의 자원개발 환경 개선, 지역사회의 기부에 대한 인식변화를 들었다. 자원개발(모금) 관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역할과 지원으로는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원, 자원개발에 대한 교육지원, 기업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성 확보 욕구가 있었다.

2. 제언

1) 선택이 아닌 필수인 자원개발 사업

보조금의 한계는 양적조사와 질적조사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시설에서 개발한 자원은 대부분 이용자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활지원, 다양한 욕구, 경험, 자립, 재활을 위한 지원에 투입되었다. 향후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속적인 국고보조금 확대와 함께 이용자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자원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현 장애인거주시설의 상황에서 자원개발 사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시설의 운영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서비스 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확보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이 안 될 때는 개별시설이 지역사회에서 각자 자원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책과 구조적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원개발을 위한 기본 인프라 부족

조사결과, 자원개발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 자원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시설에서 자원개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 사업은 단순하게 자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지, 참여로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기반으로 전략적 기획과 운영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는 자원개발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자원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 평균 모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 간의 네트워크 접근성이 원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는 네트워크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부문화 확산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사회적 책무로 수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시설 내 자원개발에 대한 사후 절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업무도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조직 차원에서 관련 부서를 독

립적 부서로 편제하고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획일적인 자원개발 방식

조사결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원개발의 방식은 프로포절 신청이나 시설방문객에 의한 개발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시설이 기부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체 예전과 별다를 것 없는 몇 가지 획일적인 방식으로 자원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설 기부자의 기부 패턴과 의식을 조사하고, 잠재기부자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는 다양한 자원개발 방식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시설의 긍정적 이미지 변화 필요

자원개발은 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다. 조사결과,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신뢰, 시설 이미지, 기존 기부자와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시설은 긍정적인 시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시설에 대한 홍보,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탈시설에 대한 이슈,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 이슈로 거주시설의 불합리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독립적인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개방성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도 함께 겪어야 한다. ‘거주시설 바로 알기’에 대한 중앙회 차원에서의 인식개선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시설이 각자의 지역사회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미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환경에 맞는 자원개발 전략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원개발 교육 지원 부족

자원개발은 개발보다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전담인력도 없고 타 업무와 병행하는 형태의 운영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향후 전담인력 배치가 확대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이 부재하며, 교육을 받은 후 현장 적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자원개발 담당자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획, 홍보, 자원개발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자원개발을 주제로 기초부터 심화까지의 단계적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사례와 실천 기술에 대한 매뉴얼 등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6)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부족

세제혜택으로 인해 비교되어 선택되지 못하는 지정기부단체의 자격으로는 기부활성화를 꾀할 수

없다. 조사에서도 기부금의 소득공제 상향조정이나 100% 세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현재의 법으로는 법정기부금 단체 전환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따라서 기부문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세금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시설 내 각종 혜택 제도 마련이 시행된다면 자원개발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철희 · 변은지 · 배민경 · 조주희. 2009.『서울시 사회복지시설·기관 기부자의 기부행동 및 관리현황에 대한 연구:기부자 충성도 제고방안을 위한 분석』.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강철희 · 정무성. 2002.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 제49호, 343-378.

고경환. 2015. “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모금동원 모형개발과 배분영역 탐색”.『보건사회연구』, 35(4): 513-538.

고경환 · 조용복 · 박을종 · 강지원 · 최성용. 2009.『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자발적 민간지출 수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 강혜규 · 이상일 · 정무성 · 임유경 · 이은영. 2002.『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개발 방안: 후원금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 김은정. 2005.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원 동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후원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57(2): 5-40.

김연수 · 이광석. 2011. “모금활동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연구”.『사회과학연구』, 27(3), 25-51.

김영종. 2002.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한국사회복지학』, 50(1): 209-233.

노연희. 2006.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자원동원 효과성과 조직의 관리능력”. 『한국사회복지학』, 58(3): 5-26.

신준섭 · 최은미. 2004.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시설의 후원사업을 중심으로”,『한국정책과학학회보』, 8(2): 91-110.

안수만. 2014. “사회복지시설의 후원활성화 방안”, 동서대학교 선교복지대학원 석사논문.

양용희. 2001.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활용 :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동작구 연합 직원세미나 자료.

정성훈. 2006. “모금활동에 있어서의 동태적 균형과 Warm-glow의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8. 『2018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현황 모니터링 분석결과』.

허은정. 2016. “소비자의 공감성향이 자선적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소비문화연구』, 19(3), 77-92

황성철. 2000.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자원동원능력 결정요인분석”.『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 173-191.

Vazquex, Rodolfo, Luis Ignacio Alvarez and Maria Leticia Santos. 2001. “Market Orientation and social services in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6(9/10); 1022-1046.

Herman, Robert. D. and David O. Renz. 2004. “Doing things right: Effectiveness in local nonprofit organizations, a panel stud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4(6); 694-704.

□ 부록

ID			

2018 장애인거주시설 자원(모금)개발 현황 및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주관하는 <2018 장애인거주시설 자원(모금)개발 현황 및 욕구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원 중 특히 모금에 대한 현황과 욕구**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진행하는 것이며, 제출하신 내용은 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순수하게 통계처리에만 이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통계법 제33조)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모바일교환권(편의점 바나나우유)를 보내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아래 참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모금사업과 드림

---

* **조 사 기 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Korea Association of Welfare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조 사 부 서** : 모금사업과 이아영 과장(☏ 070-5096-8930 / kawid@kawid.or.kr)
* **책임 연구자** : 책임 연구자 정현경(010-8823-0625 / blindnet@hanmail.net)
* **회 신 방 법** : 설문지를 받은 해당 시도협회 이메일로 회신

★ 조사를 위해 꼭 읽어 주세요.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자원 중 특히 모금 개발과 관련된 욕구와 현황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조사합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이 조사를 통해 회원시설들의 자원(모금)개발을 위한 지원 방향성과 구체적인 역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2. 조사대상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등록된 회원시설 약 700개소

3. 조사방법

- 17개 시도협회를 통한 이메일 조사
- 설문지는 총 8개 영역의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장입니다.

4. 조사기간

- 설문조사 기간 : 2018년 7월 23일 ~ 8월 3일까지(2주간)

5. 담당자 및 반송방법

- 담당자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아영 과장 (☏ 070-5096-8930 / kawid@kawid.or.kr)

*** 회 신 방 법:** 설문지를 받은 해당 시도협회 이메일로 회신

6. 본 조사에서 사용되는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 자원개발 : 물적자원, 인적자원, 정보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조사서에서는 물적자원 중 주로 현금과 물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문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용어통일 : 자원개발, 후원, 기부, 모금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서에는 주로 현금에 대한 '모금'으로, 또한 후원자를 '기부자'로 명칭을 통일하겠습니다.

7. 설문지 응답자

- 시설 내에서 모금 혹은 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관련 책임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기관의 일반적인 사항

---

1. 귀 시설의 설립년도는 언제입니까? ( )년

2. 귀 시설의 소재지역은 어디입니까? ( )시·도 ( )시·군·구

3. 귀 시설 유형은 무엇입니까? ※중복으로 √ 표시 가능

( ) ①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시설 ( ) ②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 ③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 ④ 지적·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 ) 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 ⑥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 ⑦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 ⑧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 귀 시설 이용자의 대표 장애유형은 무엇입니까? ※중복으로 √ 표시 가능

( ) ① 지체·뇌병변 장애인 ( ) ② 시각장애인

( ) ③ 청각·언어장애인 ( ) ④ 지적·자폐성장애인

( ) ⑤ 기타( )

5. 귀 시설의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현원기준) ( )명

6. 귀 시설의 이용자 수는 몇 명입니까? (현원기준) ( )명

7. 귀 시설의 운영 주체는 무엇입니까?

( ) ① 정부·지자체 ( ) ② 사회복지법인

( ) ③ 사단법인 ( ) ④ 재단법인

( ) ⑤ 개인운영 ( ) ⑥ 기타( )

2. 자원(모금)개발과 관련된 조직 현황

---

1. 귀 시설에서 자원개발(후원, 모금 등) 업무만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 ) ① 예(☞1-1로 이동) ( ) ② 아니오(☞1-2로 이동)

1-1. 귀 시설의 자원개발(후원, 모금 등)만을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있다면** 몇 명이 있습니까?

( )명

1-2. 전담직원이 없다면 자원개발(후원, 모금 등)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 ① 겸직(☞1-3으로 이동) ( ) ② 업무발생 시 업무분장에 따라 진행

( ) ③ 기타( )

1-3. 겸직의 경우 어떤 업무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2. 자원개발(후원, 모금 등) **주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이전 근무 시설 포함)에서 자원개발(후원, 모금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총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년 ( ) 개월

2-1. 그 중 현재 **재직 중인 시설에서 자원개발(후원, 모금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총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년 ( ) 개월

3. 자원개발(후원, 모금 등) **주 담당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남자 ( ) ② 여자

4. 자원개발(후원, 모금 등) **주 담당자의 직급/직위**는 무엇입니까? (예-팀장, 팀원 등)

( )

5. 귀 시설에서는 자원개발(후원, 모금 등)을 위해 위원회(또는 후원위원회, 모금위원회 등) 혹은 봉사팀(예, 대학생모금봉사단, 모금봉사단, 후원봉사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 ① 예(☞5-1로 이동) ( ) ② 아니오

5-1. 있다면 명칭과 참여인원을 아래 표에 의거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칸 추가 가능

구분 (☑표시)		명칭	참여 인원(명)	주요활동
( )	위원회			
( )	봉사팀			
( )	위원회			
( )	봉사팀			
( )	위원회			
( )	봉사팀			

6. 귀 시설(또는 법인)에서 홍보대사(직원 외)의 활동을 통해 자원개발(후원, 모금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6-1로 이동) ( ) ② 아니오

6-1. 홍보대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3. 자원(현금과 현물) 개발 및 사용 현황

---

1. 귀 시설은 자원개발(모금)을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 ① 예(☞1-1로 이동) ( ) ② 아니오

1-1. 자원개발(모금)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자원개발(모금)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계획대로' 는 성과 여부가 아닌 계획서에 기재된 방향, 방식, 방법에 대한 충실한 활동을 의미함

( ) ① 예 ( ) ② 아니오

2. 귀 시설의 자원개발 중 **모금액(현금자원)**액과 관련된 현황입니다.

(단위: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모금총액(원) **(a+b+c+d+e+f+g)**			
- a. 정기 개인기부			
- b. 일시(비 정기)개인기부			
- c. 기업 및 재단			
- d. 민간단체			
- e. 모금배분기관			
- f. 모금이벤트			
- g. 기타( )			
귀 시설 전체 수입예산 중 모금액이 차지하는 %	%	%	%

- a.정기 개인기부 : 정기적으로 약정하고 3개월 이상 기부한 기부자의 금액
- b.일시(비 정기) 개인기부 : 정기적으로 약정하지 않고 최근 3년동안 1회 이상 기부한 기부자의 금액
- c.기업 및 재단 : 기업, 재단을 통한 기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받은 금액
- d.민간단체 : 종교단체, 사회단체, 친목회, 봉사단체 등에서 기부받은 금액
- e.모금배분기관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모금 및 배분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
- f.모금이벤트 : 일일호프, 바자회, 음악회 등 물품, 음료, 티켓 판매로 발생된 금액

3. 귀 시설의 자원개발 중 **모금총액(현금)**에 대한 지정, 비지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단위: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모금총액 (a+b+c)			
- a. 지정기부금			
- b. 결연기부금			
- c. 비지정기부금			

- **모금총액(a+b+c)은 2번 항목의 '모금 총액' 의 합계와 동일해야 함**
- 지정기부금 : 기부자가 대상자 결연 외에 목적성을 가지고 기부하거나 시설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에 기부된 것을 의미함
- 결연기부금 : 특정 대상자(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게 지정되는 기부금을 의미함
- 비지정기부금 : 기부자가 특별한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기부한 것을 의미함

4. 귀 시설의 개인 기부자 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기부자수 합계 (a+b)			
- a.정기기부자			
- b.일시(비정기)기부자			

5. 귀 시설에서 **모금(현금)된 자원**은 주로 어느 영역에 사용되었습니까?

(단위: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모금총액 (a+b+c+d+e+f+g)			
- a.관리운영비			
- b.사업비(프로그램비 포함)			
- c.인건비(수당포함)			
- d.대상자 결연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 e.기능보강비			
- f.기타( )			
- g.기타( )			

- **모금총액(a+b+c+d+e+f+g)은 2번 항목의 '모금 총액' 의 합계와 동일해야 함**

6. 귀 시설에서 향후 **자원개발(현금)**을 통해서 지원받아야 될 영역의 순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시오.

영역	순위기록	구체적 내용
관리운영비		
기능보강비		
의료비		
프로그램지원비(사업비 포함)		
주택구입비(예-자립,체험홈)		
종사자 복리후생비(급여, 수당포함)		
종사자 교육비		
기타( )		

7. 아래 예시된 물품 중 최근 3년 동안(2015년~2017년) **가장 많이 기부 받은 물품 3가지**를 작성하시오. ※번호로 표기

<예시>
① 쌀 ②식료품(부식 등) ③생필품 ④의류 ⑤문화공연티켓 ⑥사무기기류 ⑦가전제품 ⑧도서류
⑨학용품 ⑩완구류 ⑪장비기계 ⑫가구류 ⑬환경개선관련 품목(벽지, 장판 등) ⑭의약품 ⑮의료기기
⑯의료비품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해당 물품이 없다면 구체적인 **물품**을 작성하시오.
( )

8. 위 예시품목 중 향후 **가장 많이 필요한 물품 3가지**를 작성하시오. ※번호로 표기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해당 물품이 없다면 구체적인 **물품**을 작성하시오.
( )

9. 귀 시설에서 **후원금(기부금)**을 받는 방식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중복으로 √ 표시 가능

( ) ① 직접현금전달 ( ) ② CMS 및 자동이체

( ) ③ 후원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 ( ) ④ 지로납부

( ) ⑤ 신용카드 및 휴대폰 납부 ( ) ⑥ 기타( )

9-1. 귀 시설에서 정기기부자의 **대표적인 기부금** 입금방식은 무엇입니까? ※주 방식에만 표시

( ) ① 직접현금전달 ( ) ② CMS 및 자동이체

( ) ③ 후원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 ( ) ④ 지로납부

( ) ⑤ 신용카드 및 휴대폰 납부 ( ) ⑥ 기타( )

4. 자원(현금과 현물) 개발 방식

---

1. 최근 3년 간 시행한 자원(현금과 현물) 개발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시오.

항 목	최근 3년 간 (2015년~2017년)		
	정기적으로 시행했음	1회라도 시행한 적 있음	한 번도 시행한 적 없음
① 인터넷을 통한 요청(홈페이지 게시 및 배너홍보)			
② 대중매체(TV.신문.지역신문.광고.잡지)를 통한 개발			
③ 해피빈, 다음 펀딩 등 온라인 모금을 통해 개발			
④ 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개발			
⑤ 지역사회 내 단체나 모임을 통한 개발 (종교단체, 부녀회, 봉사조직, 반상회 등)			
⑥ 구청 또는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통한 개발			
⑦ 시설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개발			
⑧ 시설에 견학한 방문객 등을 통한 개발			
⑨ 기존 기부자에게 재기부나 지인추천 개발			
⑩ 이용자 혹은 이용자 가족을 통한 개발			
⑪ 시설 직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개발			
⑫ 지역 상가, 학교, 단체, 은행, 대형마트 등 저금통(모금함) 설치			
⑬ 특별모금행사 (바자회, 일일호프, 상품판매, 후원의 밤, 음악회 등) 개최			
⑭ 거리모금			
⑮ 사업 프로포절(기업,단체,모금배분기관 대상) 제출			
⑯ 직원 및 부서별 개별 목표 모금액 할당			
⑰ 기타 ( )			
⑱ 기타 ( )			

2. 2번 예시방법 항목 중 귀 시설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번호로 표기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5. 자원개발(현금과 현물) 활성화에 미치는 요인

---

1. 귀 시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원개발(현금과 현물) 활성화 요인에 관한 질문으로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시오.

항 목	매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자원개발 전담부서와 전담자 유무				
② 자원개발 전담자의 인원 수				
③ 자원개발 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				
④ 자원개발 담당자의 관련 업무 지식과 기술				
⑤ 자원개발 담당자의 업무 적극성				
⑥ 자원개발 담당자의 시설 내 직위				
⑦ 자원개발 담당자의 시설에 대한 믿음				
⑧ 자원개발 담당자의 개인 네트워크				
⑨ 전체 직원의 후원인식, 의지, 참여				
⑩ 지역사회와의 지리적 접근성				
⑪ 시설과 지역과의 네트워크				
⑫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미지				
⑬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여도				
⑭ 시설 외관과 환경의 열악성				
⑮ 시설의 규모				
⑯ 시설의 종교적 성향				
⑰ 시설장의 자원개발 인식과 의지				
⑱ 시설장과 지역사회의 유대성				
⑲ 지역주민이 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확신				
⑳ 시설 이용자의 특성(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㉑ 자원개발 목적(명분)				

항 목	매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㉒ 자원개발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요청				
㉓ 시설 사업에 대한 홍보				
㉔ 다양한 자원개발 프로그램(예, 나눔교육, 결연안내 등)				
㉕ 효율적인 자원개발 업무 시스템(계획수립, 역할, 업무분장 등의 명문화 및 규정 혹은 규칙에 의한 실행)				
㉖ 기부자 전산 관리시스템(국가정보시스템 외에 별도 기부자 전산관리 프로그램 등)				
㉗ 기부자 관리예우에 대한 시설 내 정책(규정 및 명문화에 의한 업무수행)				
㉘ 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㉙ 기존 기부자와의 신뢰성				
㉚ 관할 담당공무원과 지자체의 후원인식				
㉛ 자원개발 경쟁(전문기관, 시설 간)				

2. 귀 시설에서 현재 자원개발을 진행할 시 **어려운 점 3가지를** 아래 항목들을 참고하여 순위별로 해당 번호와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시오.

① 전담인력 부재 ② 자원개발관련 지식, 기술 부족

③ 시설장의 인식 부족 ④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한 관심 부재

⑤ 지역사회와 시설 간 (인적.물적)네트워크 부족 ⑥ 지역사회와 시설 간 접근성

⑦ 기부금 세제 등 각종 혜택 미비 ⑧ 기타( )

순위 (해당하는 **보기 번호 작성**)		**구체적인 어려움**
1순위		
2순위		
3순위		

3. 귀 시설에서 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 아래 항목들을 참고하여 순위별로 해당 번호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작성하시오.

① 관련 법 및 규정 개정
② 자원개발 관련 예산 지원 및 확대
③ 전담인력 배치
④ 자원개발 지식 및 기술 관련 교육지원
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 대상 의식관련 교육지원
⑥ 지역사회 및 시민 대상 의식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⑦ 기부금 세제 등 각종 혜택 확대
⑧ 기타( )

순위 (해당하는 **보기 번호 작성**)		**구체적인 지원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6. 기부자 관리예우 방식

※'기부자 관리예우 방식'이란 기부자에 대한 감사와 보고, 시설과의 소통, 사업안내, 기부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촉진과 참여, 기부자로써 권리 및 혜택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1. 기부자 관리 예우 시행여부와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시오.

기부자 관리예우 방식	**시행여부**		**시행방식(※대표방식에만 표시)**
	시행	**미시행**	
① 첫 기부 감사메세지			( ) 문자 ( ) 전화 ( ) 우편 ( )방문 ( ) 기타( )
② 기부 해지 메세지			( ) 문자 ( ) 전화 ( ) 우편 ( )방문 ( ) 기타( )
③ 정기 기부금 입금 감사메시지			( ) 문자 ( ) 전화 ( ) 우편 ( )방문 ( ) 기타( )
④ 기부자 기념일(기부자 개인적 기념일, 기부기념일 등 포함) 축하			( ) 문자 ( ) 전화 ( ) 우편 ( )방문 ( ) 기타( )

기부자 관리예우 방식	시행여부		시행방식(※대표방식에만 표시)
	시행	미시행	
⑤ 절기(새해, 연말, 명절 등) 인사			( ) 문자 ( ) 전화 ( ) 우편 ( )방문 ( ) 기타( )
⑥ 시설소식 및 안내			( ) 문자 ( ) 전화 ( ) 우편 ( )방문 ( ) 기타( )
⑦ 사업보고 및 기부금 사용내역 안내			( ) 문자 ( ) 전화 ( ) 우편 ( )방문 ( ) 기타( )
⑧ 기부자들로 구성된 소모임이나 동아리 운영(인터넷 활동 포함)			
⑨ 기부자의 밤(감사의 밤) 등과 같은 행사			
⑩ 기부자 포상			
⑪ 기부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⑫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연말공제 정보를 제공			
⑬ 결연대상자에 대한 소식전달,만남,기관방문			
⑭ 시설행사나 프로그램에 초대			
⑮ 기타( )			

2. 귀 시설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1번의 기부자 관리예우 방식 중 가장 필요한(효과적인) 3가지 방식을 순위별로 작성하시오. ※번호로 작성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3. 귀 시설에서 1번의 기부자 관리예우 방식 중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해야 할(할 필요가 있는) 3가지 방식을 순위별로 작성하시오. ※번호로 작성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 기타 기부자 관리예우 방식에 대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은 무엇입니까?

7. 자원개발(현금과 현물) 윤리

---

1. 귀 시설에는 자원개발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 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 ) ① 있다(☞1-1로 이동) ( ) ② 없다(☞2로 이동)

1-1. 있다면 규정(규칙, 기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

2. 귀 시설에서 개발된 자원에 대한 배분 규정이나 규칙 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 ) ① 있다(☞2-1로 이동) ( ) ② 없다(☞3으로 이동)

2-1. 있다면 규정(규칙, 기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 )

3. 미국 모금가협회(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는 모금전문가(Fundraiser)들의 모금 활동에 대한 윤리적인 책무를 위하여 기부자 권리장전 선언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기부자 권리장전선언 (A Donor Bill of Right)

자선(philanthropy)은 공익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기초로 하며 삶의 질의 전제가 되는 기부와 나눔의 전통이기도 하다.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자선에 대한 정의와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부자 및 잠재 기부자로 하여금 비영리조직 및 이들에 대한 지원 명분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기부자의 권리를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Ⅰ. 기부자는 기관의 사명, 기부자원의 사용 방법, 목적 달성을 위한 기부 자원의 효과적 사용과 이와 관련된 기관의 역량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Ⅱ. 기부자는 이사회에 누가 참가하고 있는지 알 권리와 이사회가 사회적 책무에 입각하여 신중한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Ⅲ. 기부자는 최근 발행한 재무보고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Ⅳ.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자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Ⅴ. 기부자는 기부에 대한 수령 여부 통지와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Ⅵ. 기부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에 대한 정보의 존중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Ⅶ. 기부자는 기부자에게 관심을 갖는 개인들 간의 모든 관계는 본질적으로 전문성에 기초할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
Ⅷ. 기부자는 기부를 요청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인지, 직원인지, 혹은 고용된 모금활동가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
Ⅸ. 기부자는 기관이 공유하고자 하는 메일링 리스트에서 자신의 이름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Ⅹ. 기부자는 기부 시 자유롭게 질문할 권리와 진실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위 제시된 10가지 기부자 권리(Ⅰ~ Ⅹ) 중 현재 귀 시설에서 그 권리요구에 응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중복으로 √ 표시 가능

( ) Ⅰ ( ) Ⅱ

( ) Ⅲ ( ) Ⅳ

( ) Ⅴ ( ) Ⅵ

( ) Ⅶ ( ) Ⅷ

( ) Ⅸ ( ) Ⅹ

8. 작성자 일반적 사항

시설명			
작성자		직 책	
※ 귀하(작성자)는 자원개발(후원, 모금 등) 주 담당자입니까? ( ) 예 ( ) 아니오			
연락처 (휴대폰)	※응답자에게 모바일교환권을 지급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메일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자가 별도로 개별 문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긴 설문에 정성껏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회원시설들의 자원개발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 연구책임자	정현경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자원개발지원실 실장)
¤ 공동연구자	박광옥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연구지원	이아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자원개발지원실 과장)

2018 장애인거주시설 자원개발 현황 및 욕구조사

발 행 일	2018년 12월
발 행 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903호 Tel. 02-718-9363 Fax. 02-718-9366 http://www.kawid.or.kr
편집·인쇄	미발간 자료